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
전문위원 백 철 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10월 13일
- 제 출 자 : 서순보 의원 외 6인

2. 위원회 회부

-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13일
- 상정일자 : 2004년 10월 15일

〈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〉

3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 의회의 활성화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일반안전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요구한 자료는 관련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.(안 제8조 제3항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자 요구 자료의 회신기간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,
- 요구 자료의 회신기간을 7일 이내로 명문화하였을 경우 요구 받은 관련부서의 요구 자료의 분량이 많다던가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회신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등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6. 관련법규 발췌

- 지방자치법 제16조(규칙)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지방자치법 제63조(회의규칙)
 -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